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·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고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안 제3조)
- 협약체결,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중 제8호 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”에 대한 의결방법과 절차,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.
-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협약체결에 대한 절차, 방법 등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의안형식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의안 제출시 첨부 서류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△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, △예산의 심의·확정 및 결산의 승인, △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·징수, △기금의 설치·운용, △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, △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, △청원의 수리·처리, △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안은 이 중 ‘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, 의회의 의결 없이 합의서나 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금천구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것임.
- 이는 협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, 추후 세출예산

으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 의회의 의결 없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, 관련 기준과 형식,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.

- ‘예산 외의 의무부담’이란 계약 등 체결 시점에 구체적 금액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,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무로서 비재정적 부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.(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-2666, 2025.5.8.참고)
- 본 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,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(대법원 2012추22, 법제처 16-0149, 17-0301), 각종 협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관련 규정 및 자료 검토 결과,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